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31	강선영의원	2025. 4. 1.	2025. 9. 2.
	2211330	백선희의원	2025. 7.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47	안규백의원	2025. 6. 16.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에서 법률안심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함.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

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 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 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제21조”를 “제21조의2”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u> <u>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1.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 지원</u> <u>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u> <u>3.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u> <u>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u> <u>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u> <u>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신 설>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0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승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
인의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